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관련 〉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3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 우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관련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6. 19.

다. 회 부 일 : 2025.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관련(안 제9조)

가. 개정안 요지

-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생략)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④ ----- -----구청장(자치구의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신고·등록, 폐업,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주요 행정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¹⁾ 교육만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포함하여 매년 모든 사업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교육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첨부한 [참고3] 참조.

의무화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법 제39조³⁾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행 중인 바, 현행법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함.⁴⁾

문 의 처

02)6788-5376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첨부한 [참고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현황 참조

참고1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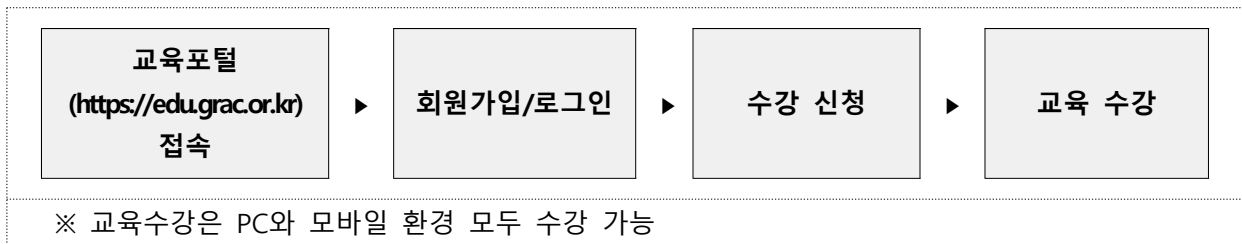
구분	의견 주요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등록, 허가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의 현행화된 정보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정보 안내, 교육 제공 등은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장이 담당하는 것이 사각지대 없는 교육 제공 및 사업자 법령 준수에 보다 적합 • 또한, 현재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고, 게임위는 온라인 교육포털(http://edu.grac.or.kr)을 통하여 균일한 콘텐츠를 제공 및 관리하고 있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 전문성이 있는 협회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될 수 있도록 '게임물 관리 협회에 위탁한다'로 개정 필요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 연 3시간 교육 의무화는 기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부담이 됨

참고2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 운영 현황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산업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사업자별 4~6개 과정 운영
 - 위탁현황: '25년 90개, '24년 97개, '23년 83개 지자체
 - 교육시간: 사업자별 3시간 이내(비용: 무료)
 - 교육수강 방법
 - 교육포털(<https://edu.grac.or.kr>) 통한 온라인 교육



□ 교육 내용

- **(교육과정)** 사업자별 4~6개 과정 운영

교육과정	교육주제	교육시간
공통 - A코스 (사업자 전체)	. 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4차시) . 게임법의 이해와 게임관련 법령동향(4차시) . 게임물 관련 제도 및 정책(4차시)	3시간 (총 12개 차시)
공통 - B코스 (사업자 전체)	. 게임법상 용어의 정의와 행정업무체계(2차시) . 게임물 관련 영업의 신고·등록·운영(7차시) . 위반자에 대한 제재(3차시)	3시간 (총 12개 차시)
공통 - C코스 (사업자 전체)	.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4차시)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6차시) .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위반 사례(3차시)	3시간 (총 13개 차시)

교육과정	교육주제	교육시간
특화 - D코스 (청소년, 일반)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6차시) ·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위반 사례(3차시) ·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타 관계법령(4차시)	3시간 (총 13개 차시)
특화 - D코스 (인터넷, 복합)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6차시) ·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위반 사례(3차시) · 사업장 운영 관련 기타 법률 안내(5차시)	3시간 (총 14개 차시)
특화 - D코스 (제작, 배급)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6차시) ·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위반 사례(3차시) · 등급분류 간소화 제도 안내(2차시) ·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타 관계법령(3차시)	3시간 (총 13개 차시)
특화-확률형 아이템의 이해 (사업자 전체)	· 확률형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방법 및 위반사례	1시간 (총 2개 차시)
특화-등급분류 및 등급거부 사례 (제작, 배급)	·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 사례 · 사행성·선정성 위반 사례 분석 · 등급거부	1시간 14분 (총 5개 차시)

□ 참고 사항

- **(위탁기관 고시)**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는 교육 업무 위탁 시 위탁한 기관을 고시
 -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항
- **(교육통지)** 지자체 교육 담당자는 관할 지역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 통지방식 :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가능
 -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공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기 위한 위탁사항 공고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고3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u>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u>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u>시장·군수·구청장은</u>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